

KTX광명역 연계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2024. 11. 12 조례 제31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철도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도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KTX광명역과 관련한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철도산업 육성) 시장은 KTX광명역을 연계한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회의 및 행사 개최
2. 철도산업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학술·학회 활동
3. KTX광명역 및 이를 연계한 철도산업의 홍보 활동
4. KTX광명역을 매개로 한 문화·관광 활성화
5.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유치 및 정착 지원
6. 그 밖에 KTX광명역 이용객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지원 대상자 및 할인기준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열차운임비 지원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KTX광명역을 출발하는 열차의 정기 승차권을 이용하는 학생 및 중위소득 150% 이내의 근로자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1인당 월 최대 5만원 한도)	